

의안번호	제193호
------	-------

발의연월일  
2023. 11. 14.

## 예산군자율방법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장순관 의원 외 8인

#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순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3호
------------	-------

발의 연월일 : 2023년 11월 14일  
발의자 : 장순관, 김영진,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이정순, 임종용, 홍원표

## 1.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예산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지도 및 감독,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바.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다. 기타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2023. 11. 17. ~ 11. 23. [7일간]
- 3)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 【붙임 2】
- 4) 성별영향평가 : 【붙임 3】

##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예산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예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8.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경비 등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방법활동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자율방법대장 및 자율방법연합대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5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법대 등은 사업계획서와 방법대 정관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 ·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 · 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법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법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 · 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자율방범대 등 보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붙임 1】

# 관 계 법령

###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자율방범대에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을 둔다.
- ③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는 사람은 명칭, 활동구역,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자율방범대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해산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① 시·도경찰청장등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앙회·연합회·연합대 설립 등)** 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시·군·구에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경찰청장에게, 연합회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연합대는 경찰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 연합회 및 연합대(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관

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불임 2】

###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예산군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

##### 2. 비용추계의 전제

- 일 근무시간 4시간에 따른 `24년 최저인건비(9,860원) 및 임금 상승률 5% 적용
-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 이수 비용 1인 50,000원 적용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도 구분	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0	0	0	0	0	0
세출	○ 자율방범대 운영비	17,204	18,604	19,534	20,510	21,535	97,387
	○ 자율방범대 교육비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37,980	137,980	137,980	137,980	137,980	689,900
	○ 자율방범대 선진치원학	13,500	13,500	13,500	13,500	13,500	67,500
	○ 자율방범대 순찰대행사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소계(b)	187,684	189,084	190,014	190,990	192,015	949,787
	□ 총 비용(a-b)	-187,684	-189,084	-190,014	-190,990	-192,015	-949,787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
군비	187,684	189,084	190,014	190,990	192,015	949,787	
민간	-	-	-	-	-	-	-
기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	-	-	-	-	-	-
합계	187,684	189,084	190,014	190,990	192,015	949,787	

5. 덧붙이는 의견 : 본 추계결과는 `24년 최저인건비와 임금상승률 5%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최저인건비 및 임금상승률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작성자 : 예산군 총무과장 박상목

### 【불임 3】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예산086							
정책명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부서명	의회사무과						
	담당자명	이종구	전화번호	041-339-7075				
성별 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1일							
주요 성별 영향평가 내용 (의회사무과)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한 사항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b>가족지원과 성별영향평가책임관</b> (담당자/연락번호 : 이용미/041-339-7912)								
의회사무과장 귀하								

## (현행)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의 군민 보호에 앞장서는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지구단위 방범대로 편성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남·녀 주민들로 구성된 비영리 방범활동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군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방범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이하 “초소”라 한다)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연합대와 연합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방범대에 적용한다.

제4조(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 및 대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하여야 하며, 방범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② 연합대는 방범대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방범활동을 지원한다.
- ③ 연합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대의 사업 범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운영비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임무 등)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

지구단위의 관할 지역으로 하되, 구성은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3. 재해, 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업무 협조 지원활동
6. 그 밖에 군 방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합대와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설치 및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 구입비, 난방비, 통신비, 상해보험 가입비,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초소 수리비 등
  2.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3. 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경비
  4. 그 밖에 연합대와 방범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된 경우
  2. 운영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대의 활동 중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7조(지도 등) ① 군수는 교부한 운영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방범대의 효율적인 지도 등을 위해 방범대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연합대에 위임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연합대와 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교육) 군수는 관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